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599호(號) 1928년(昭和 3) 12월 28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93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12월 2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중(中) 소주(燒酒)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 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 역(發驛)	착 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 륜(賃率)	기 사(記事)
당밀(糖密)	선교리(船橋里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소화물급 (小貨物扱)	4할(割)5푼(分) 감(減)	본(本) 임률(賃率)은 1929(昭和 4)년 3월 31일까지에 한(限)해 적용(適用)함